

정책·성과중심의

- 2015년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5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 2015년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7일(월),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4년 11월 21일(금)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제127조
- 『지방재정법』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제36조

5. 2015도 마포구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안	2014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455,805	432,265	23,540	5.45%
일반회계	393,930	366,237	27,693	7.56%
특별회계	61,875	66,028	△4,153	△6.29%
의료보호기금	416	412	4	1.00%
마포농수산물시장	7,906	6,975	931	13.35%
주차장	53,553	58,641	△5,088	△8.68%

6.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 총괄

(단위:천원)

구분	2015년도 예산액	2014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3,903	0	13,903	순증

나. 일반회계 세부사업 예산안

▣ 규제개혁추진단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2015년도 예산액	2014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9,033	0	9,033	순증
정책사업	4,744	0	4,744	순증
재무활동	0	0	0	0
행정운영경비	4,289	0	4,289	순증
일반공공행정	4,744	0	4,744	순증
일반행정	4,744	0	4,744	순증
불합리한 규제개선	4,744	0	4,744	순증
규제개혁추진	4,744	0	4,744	순증
기타	4,289	0	4,289	순증
기타	4,289	0	4,289	순증
행정운영경비(규제개혁추진단)	4,289	0	4,289	순증
기본경비	4,289	0	4,289	순증

< 주요 증감내역 >

(단위:천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액	2014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규제개혁추진단>				
규제 사전 심사 및 규제 정비				
사무관리비	3,144	0	3,144	순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	0	1,600	순증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769	0	1,769	순증
국내여비	2,520	0	2,520	순증

[검토보고]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예산 규모>

- 2015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322억 6,500만원 대비 약 0.003%에 해당하는 1,390만 3천원으로 조직신설(2014.7.1.)에 따른 신규로 예산을 편성함.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

-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세출예산액은 474만 4천원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사전 심사 및 규제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314만 4천원을 1)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34만 4천원, 2)규제개혁 직원교육 120만원, 플래카드 20만원, 4)홍보용 인쇄비 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신규 편성함.
-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은 428만 9천원으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6만 9천원을 1)기본사무용품비 4만 5천원 2)전산소모품비(프린터 토너) 46만 4천원 3)급량비(현안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126만원과 국내여비(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252만원을 신규 편성함.

< 산 출 근 거 >

- 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 : 314만 4천원
 -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 7만원×6명×4회×80%
 - 교육강사료 = 50만원×2회 = 100만원
 - 플래카드 = 10만원×2회 = 20만원
 - 인쇄비(홍보용 포스터) = 3,000원×200부 = 60만원
- 업무추진비 : 160만원
 - 규제개혁 업무추진비 = 200만원×80% = 160만원

< 검토의견 >

- 규제개혁추진단은 구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2014. 7. 1.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어 종전의 행정기구를 안전·교육·문화·복지 분야 업무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정책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2014. 10.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조직개편을 하였음.
-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 1)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46건의 규제를 정비를 실시하였고,
 - 2) 구민과 직원이 추진하는 행정쇄신을 위해 782개 아이디어(구민 195건, 직원 587건)를 접수받아 소관부서별 제안별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은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시 구민의 생활을 저해하는 행정 규제 개혁추진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행정규제 대상이 되는 불편·부당한 규제의 개혁과 신설 등 규제의 제한여부 등에 대한
 - 1)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에 규제여부 검토 및 심사·조정
 - 2)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정비
 - 3)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등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 하고 있음
-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규제개혁 추진을 하다보면 규제개혁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개혁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규제를 푸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규제를 풀고 난 이후 오히려 규제를 풀기 전보다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초래하거나 규제가 더 강화되지는 않은 것인지 등 주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의 고충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 규제개혁 이후 주민들이 규제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최선을 기하여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1935호, 2013.7.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